



심사위원 가이드라인

STEWARD GUIDELINES



2024 KARA 심사위원 가이드라인

서문

1. 심사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2. 판정의 도출과 비밀 유지
 3. 규정의 숙지
 4. 심사위원 준수 사항
 5. 서킷 도착
 6. 트랙 인스펙션
 7. 차량 검사
 8. 영상 장비
 9. 소환
 10. 판정
 11. 판정의 통보 및 공지
 12. 공식 연습주행
 13. 예선
 14. 스타트 절차
 15. 결승
 16. 결승 후
 17. 순위
 18. 항의
 19. 재조사 권한
 20. KARA에 항소하기 위한 절차
- 2024 KARA 심사위원 항의 절차 수행 체크리스트
심사위원회 출석요청서, 결정문 양식

※ 본 자료는 FIA심사위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문

모터스포츠 대회 성공은 심사위원들이 공개된 재량권 및 ISC(국제스포츠규정)와 ASN의 규정 그리고 각 대회의 스포츠 및 기술 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적용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지침을 제공하고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ISC와 대회 특별규정(스포츠&기술규정)은 모든 상황하에서 우선시 된다. 심사위원은 "경찰"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판사"다. 심사위원들이 경기위원장이나 레이스 디렉터에게 자신들이 식별한 잠재적 위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반 상황 발생 시 경기위원장이나 레이스 디렉터가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심사위원들은 항상 FIA나 ASN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존중 받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팀이나 선수 등 대회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정기적인 환대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 1.1 ISC 제11.9조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0.10조의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ISC 제11.9.3.t조[경기 이후 판정]와 제14.1조[재조사 권한]를 조건으로 FIA 규정, KARA 국내스포츠규정과 대회 특별 규정 및 지명된 대회 체제 내의 공식 프로그램의 집행 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가지며 특히 규정 위반 시 시행할 페널티를 결정할 수 있다.
- 1.2 페널티의 적용이나 제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고 권한은 FIA 국제 항소 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2. 판정의 도출과 비밀 유지

- 2.1 심사위원의 판정은 항상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기 전에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에게 참가자(팀/드라이버)나 외부 그룹에 의해 이해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 2.2 심사위원회,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위원과 경기 사무국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과 상업 또는 산업적으로 연관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FIA 윤리 강령에 의해 적용 받는다.
- 2.3 판정이 내려지고 발표 될 때 심사위원회는 그것과 관련하여 드라이버, 팀 매니저 또는 팀 대표와 논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은 판정이 팀들에 전달 될 때 필요한 모든 의견을 넣는 것이 좋다.
- 2.4 심사위원들은 절대로 대회의 미디어 담당이나 KARA 이외의 다른 그룹과 판정에 대해서 논의 하거나 논평하지 말아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통하여 대회 미디어 대표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최근 몇년 동안 과거 F1 대회에서도 전직 드라이버 출신의 심사위원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미디어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회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디어와 일반 대중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FIA는 심사위원들이 FIA의 승인 없이 특정 판정에 대하여 언론과 대화하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3. 규정의 속지

- 3.1 심사위원들은 FIA의 ISC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을 기본으로 속지하고 항상 경기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3.2 또한 대회 특별규정(스포츠규정/기술규정)을 속지하고, 부분 변경된 규정이 없는지, 해당라운드에 특별하게 적용된 규정을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준수 사항

- 4.1 심사위원은 KARA 또는 대회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패스를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 4.2 심사위원은 대회사무국에 경기장 도착 시간과 교통편, 여행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최소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검차에 참여하거나 기술대표의 감독하에 검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 4.3 KARA(또는 대회주최자)는 심사위원회에 셔츠를 제공한다. 이것은 대회기간 중 매일 착용하여야 한다. 정장이나 스마트 캐주얼(청바지는 아님)을 입고있어야 하며 특정팀과 관계된 상표나 로고가 부착된 모자나 자켓(KARA 또는 대회주최자와 관계된 브랜드 제외)은 경기장에서 심사위원들은 입을 수 없다.
- 4.4 심사위원은 항상 KARA의 시니어 오피셜이자 대표임을 기억하라. FIA Action for Road Safety 캠페인을 의식하고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전하도록 한다.
- 4.5 각각의 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과 회람될 문서를 준비한다. 이 문서는 남은 시즌 동안 심사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각각의 경기의 이슈와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서킷 도착

- 5.1 대회주최자 또는 KARA에서 마련한 심사위원실을 확인하고 지원팀(대회사무국, 심사보조원등)과 익숙해 진다.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실 출입패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특별인원(소환인)만이 심사위원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 5.2 심사위원장은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회의를 주재하여 심사를 시작하기전에 심사

업무방식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전 대회 또는 이전 라운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한다.

- 5.3 또한 심사위원회는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업무 방식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전 경기들을 검토한다.
- 5.4 팀 감독회의 또는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한다.
- 5.5 양방향 무전기 1대를 습득하고 해당 작동법을 익힌다. 트랙에 나가있는 동안 심사위원회 사무실 부재 시 항상 이 무전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6. 트랙 인스펙션

- 6.1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와 관제실을 방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구간과 사고의 유형등에 대한 경험을 묻는다.
- 6.2 보다 나은 트랙 속지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킷을 확인한다(최소 2레이스).
- 6.3 피트 입/출구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이 서킷에서 라인을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판정 방법을 명확히 한다.
- 6.4 또한 일반적으로 대회시작전에 가능한 경우 최소 한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서킷을 걷는 것을 권장한다.
- 6.5 드라이버 출신의 심사위원이 있다면 자신의 관점에서 사고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특별히 주의하여 인스펙션 랩 동안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선수들의 주행(레코드)라인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좋다.
- 6.6 트랙인스펙션 종료 후 KARA 파견 심사위원은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차량 검차

- 7.1 기술 대표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권고에 따라(혹은 기술위원에 의해) 심사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 봉인될 해당 부품의 탈거 또는
 - 검사를 위해 해당 부품이 차량에 부착된 상태여야 하는 경우 봉인된 상태로 차량 보관

7.2 봉인을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기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판정 연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관련된 경기참가자(들)의 심리 후에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회의 날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봉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 대표(또는 기술위원)과 사인, 측정치 등 기타, 각각 자료와 관련된 당사자가 서명한 기록 파일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안이 결정될 것이다.

7.3 차량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성능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8. 영상 장비

- 8.1 심사위원회는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디오나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8.2 심사위원실에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및 모니터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이 장비를 활용하여 대회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판정과 각각의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페널티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3 이 조항으로부터 나온 결과로 위에서 언급된 비디오나 전자 장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의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줄 때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단관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만의 발견과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
- 8.4 판정과 해석의 최적화를 위해 카메라의 종류(이미지 화질, 줌 가능 여부)와 설치 위치(투시도, 시야각도)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있을 경우 질문을 하거나 조연(카메라의 위치 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9. 소환

- 9.1 만약 심사위원회가 팀 또는 드라이버와 대화나 소환을 원하면 소환통보서를 이용하여 그들을 심사위원실에 방문을 요청 할 수 있다.
- 9.2 모든 소환은 팀이나 드라이버의 심사위원실 출석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9.3 어떠한 소환장이든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소환 시간이 알려졌다면 혐의 당사자로 인식된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9.4 심사위원회에서 심리를 위해 드라이버나 팀을 소환할 때 당사자 도착 전에 청취를 한 명씩 할지 한꺼번에 할지를 정하라. 두 방식 모두 해당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공식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환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

- ⇒ 소환 날짜와 시간
- ⇒ 참석이 요구되는 팀/드라이버 이름
- ⇒ 규정을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팀/드라이버
- ⇒ 심리 장소와 시간
- ⇒ 소환 사유 (혐의가 제기된 사실)
- ⇒ 혐의가 제기된 경기운영규정/또는 기술규정
- ⇒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10. 판정

- 10.1** 심사위원들은 판정을 내리기 전에 활용 가능한 모든 사실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2** 심사위원들 모두가 합의한 판정을 내리고 모든 심의와 판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10.3** 심사위원들은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 10.4** 판정에 영향을 받는 팀과/혹은 드라이버에게 청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팀과/혹은 드라이버에게 정확히 무엇을 조사 중이고 그들이 위반했다고 혐의 제기된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 10.5** 심사위원들은 관련 당사자가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모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선수가 참가할 경우 통역을 활용하여 이해시켜야 한다.
- 10.6** 심사위원들은 조사나 절차의 공정성이나 철저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숙의하고 판정한다. 결승 동안에는 결정의 정확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건/사고 발생 후 가능하면 2-3랩 안에 판정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판정을 내리는데 지연이 될 경우(증인 또는 증거 불충분) 지연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0.7** 심사위원들은 공식문서 양식을 통해 판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판정의 이유와 페널티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 10.8** 심사위원회는 즉시 모든 판정을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은 기록 스크린 메시지를 통해 관련된 팀과/또는 드라이버에게 알려야 한다.

판정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

- ⇒ 판정한 날짜
- ⇒ 판정이 발표된 시간
- ⇒ 관련된 팀/드라이버
- ⇒ 관련 당사자(들)의 소환
- ⇒ 관련 당사자(들)의 심사위원회 심리 참석
- ⇒ (만약 있다면) 다른 오퍼셜 보고서에 대한 언급
- ⇒ 사건의 사실 내용(들) (정확한 서술)
- ⇒ 위반된 경기운영규정 또는 기술 규정 조항
- ⇒ 판정의 근거, 잘못된 일이거나 과실이거나 객관적인 책임(잘못이 없는 경우) 여부
- ⇒ 페널티(있을 경우 기재)
- ⇒ 항소권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사실
- ⇒ 판정 시간
- ⇒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근거제시 : 심사위원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해당 판정을 내리게 된 법칙과 사실적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정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서술은 판정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판정의 설명은 그 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위반 : 제재를 가하기 위한 판정은 오직 규정에 의거하여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

며 다른 기준, 정의 또는 규정에 없는 개념은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사고"는 해당 FIA 챔피언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 또는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예견될 수 없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유형 상황에 대한 다른 언급("피할 수 있는 사고", "위험한 사고" 또는 "의도적인 사고")는 되기하기 쉽다.

오피셜이 작성한 보고서 : 비록 심사위원회가 심리 시간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시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한다. 레이스 디렉터와 기술 대표(만약 있다면)가 작성한 보고서는 오직 사실에 근거한 사항만 포함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 여부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 소관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에서 심사위원회가 사용 가능한 기술 데이터의 경우 이 장비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오피셜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경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판정의 통보 및 공식

11.1 대회 중

⇒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직접 전달, 심사위원회는 이 결정문이 항소할 수 있도록 실제 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 게시판에 게시,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항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순위와 결과는 오피셜에 의해 결정된 모든 판정과 함께 게시 시간과 함께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며 또한 디지털 공식 게시판(있을 경우)에 게시된다.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은 모두 보존되어야 하며, 디지털 공식 게시판 또는 조직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판정, 순위 또는 기타 공식 문서들 또한 동일하다. 심사위원회는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공식적으로 계속된 기록과 게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되고 신뢰 할 수 있는 계속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최종 판정된 세기 문서에 근거하여 항의를 할 수 있다.

11.2 대회 종료 후

대회 종료 후 판정을 내려야 할 경우 상기에 언급된 원칙과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방어권을 존중할 목적으로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서면 소환 요청 후 청

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소환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새로운 심리 장소,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가능한 수단(예: 이메일)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 요청(항소 시간 제한을 시작할 목적으로)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대회의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 11.3 심사위원회에서 1시간 이내에 항소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항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판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판정문이 공표된 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SN에 항소 제기하고 항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시간 제한은 따라서 연기된다.

12. 공식 연습주행

- 12.1 모든 심사위원들은 참가 차량의 트랙 주행을 허용된 순간부터 가능한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한다.
- 12.2 약천후, 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타임 테이블의 변경에 대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한 후에 가능하다.
- 12.3 연습주행 동안 사건/사고는 세션 종료 후에 처리되어야 하나 최대한 빠르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사건/사고가 조사 중인 경우 TV 스크린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 12.4 일반적으로 오직 심사위원장 만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무전기등을 통해 1:1 다이렉트 대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3. 예선

- 13.1 예선 동안 사건/사고는 보통 예선진행 완료 후 심리한다. 이것은 드라이버와 팀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사건/사고에 관하여 논평하고 관련된 기술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13.2 예선 중 기술 규정 위반은 공식 예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다루어져야 한다.

14. 스타트 절차

- 14.1 모든 그리드/스타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최소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실에 머무르거나 관제실과 무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포메이션 랩 스타트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 스타트 절차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이나 기술 대표로부터 보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 14.2 포메이션 랩과 관련한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포메이션 랩 때 추월은 금지된다. 모든 차량이 포메이션 랩을 떠난 후에 정지한 차량은 결승 최후미 그리드에서 스타트 해야 한다.)
- 14.3 점프 스타트 보고가 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정한다.
- 14.4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은 스타트 플랫폼에서 첫 랩 사고를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조언할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할 경우 플랫폼을 떠나기 전에 완료될 것이나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은 관제실로 1랩 안에 복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부정 경기위원장이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15. 결승

- 15.1 첫 번째 코너의 사건/사고 발생을 주시하여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차량 사고의 원인, 푸싱으로 인한 트랙 이탈, 트랙 이탈 주행과 얻는 이득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건/사고 보고서의 결과인 드라이브 스루나 스탑 앤 고 페널티는 신속하게 발표한다.
- 15.2 차량이 시케인을 놓친 뒤 드라이버가 트랙에 복귀할 때 이점을 얻었으면 얻은 이점은 되돌려져야 한다.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서를 참조한다.
 ※ F1 드라이버규정 :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놓쳤으나 추월하지 않았으면 해당 드라이버는 시케인 이후 두 개의 턴을 더 통과할 때까지 앞차를 추월 할 수 없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트랙을 이탈한 차량과 복귀와 관련되어 합의된 사항이다.
 a)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순위 변동이나 시간 이득이 없는 경우. 즉 코너 전과 동일 순위 유지 - 조치 없음 (2번째는 관제실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세번째는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b)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시간 이득을 얻는 경우
 c)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다른 드라이버를 추월

d)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그로 인한 순위 변동이 있는 경우 팀은 해당 순위를 돌려줄 것을 권고 받거나 해당 문제가 심사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다.

- 15.3 결승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사건/사고 페널티를 발령하도록 노력한다.(결승 종료 3랩 전까지)
- 15.4 최종 3랩 동안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승 종료 후 결과에 페널티가 부과될 것을 유념한다.(드라이브 스루 또는 스탑앤고 페널티의 경우 각각의 페널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최종레이스 시간에 가산한다.)
- 15.5 조사 대상 드라이버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로 하여금 경기 종료 후 5분 이내에 기록 모니터 화면을 통해 대상 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15.6 결승 종료 후에 사건/사고가 보고되거나 작성되었을 경우 정보 스크린은 결승 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사건/사고가 조사될 경우 이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스크린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대중을 위하여 그들의 경기중계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 15.7 심사위원들은 결승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결승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드라이버가 서킷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팀이나 드라이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15.8 기술대표로부터 올라온 차량, 연료, 타이어, 소프트웨어와 기타 기술 또는 전자적 장비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팀 피트를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이 이 문제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기술대표는 심사위원이 아님을 유념하며 그는 오직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고하며 발생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판정은 심사위원회가 한다. 기술 대표의 보고서는 그 자체적으로 발생된 위반 사항의 결정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나 "전문가" 보고서로서 간주되어 진다. 기술 대표 보고서와 관련된 심리가 있을 경우 보고서를 입증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심사위원회 관련된 대상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술 대표의 참석은 중요할 수 있다.
- 15.9 페널티 발표 전에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 보고서에서 차량 번호, 드라이버 이름과 팀을 확인한다.

15.10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한 페널티는 일관되어야 하고 보통 드라이버의 경력은 페널티를 결정하는데 무시되기 때문에 페널티 별점 제도는 드라이버의 이전 기록을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드라이버가 행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점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드라이버 위반 이력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결승 후

16.1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이 공식 결과에 서명한 경우 허용된 항의 또는 항소 시간 동안 출석해 있어야 한다.

16.2 판정이 경기일 이후 내려져야 할 경우(예:기술 평가 이후) 이전에 언급된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ISC 제12.10조에 의거한 출장정지나 ISC 제12.4조에 의거한 제외 또는 출장 정지를 부과하는 판정은 해당 판정을 팀과/또는 드라이버에게 통보 전에 서면 호출에 따른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 유효하지 않다. 이 결정은 특별히 심사위원회의 새로운 심리를 위한 장소,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며 심사위원회의 판정은 서면과 우편, 이메일, 팩스로 통지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경기와 관련된 모든 심사위원회 패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기술 대표의 보고서와 필요한 전문가의 추가 보고서(심사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서류 양식)를 포함하여야 한다.

17. 순위

17.1 2018년 1월 1일 부터 최종과 잠정 순위는 ISC 제2.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최종 순위" : 심사위원회에서 서명하고 최종 검차 완료되고/거나 모든 심사위원회의 판정이 공표된 결과(항소나 이후의 기술적 점검의 경우 통고가 추가될 수 있다).

"잠정 순위" : 해당 세션이나 경기 종료 후 공표된 결과. 이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잠정 순위에 대한 항의

- ISC 제13.3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항의
- 경기 중 발생하는 혐의 있는 오류,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규정에 부적합 혐의가 있는 차량
- 경기 후 수립된 순위

17.2 항의는 경기운영규정이나 대회특별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거나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30분 안에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기록 공표 후 3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3 각각의 드라이버(적절한 경우 코드라이버, 팀과 제작자)의 모든 포인트는 경기운영규정이나 대회특별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가 서명한 최종 순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18. 항의

18.1 경기 도중 ISC 제13.3조,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조에 의거한 시간 제한 안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항의 할 수 있다.

- 팀 또는 드라이버의 엔트리 (부정 참가등)
- 코스 길이
- 핸디캡
- 히트나 결승의 구성
- 혐의가 제기되는 오류, 대회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기되는 차량 또는 경기 종료 후 발표된 순위

18.2 ISC 제13.1조,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3조에 의거하여 항의 권한은 오직 하나의 경기참가자에게 있다. 여러 명의 경기참가자들이 제기하는 공동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18.3 여러 명의 경기참가자가 관련된 경우 각각의 개별 경기참가자들이 별도의 항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한 팀의 여러 차량이 관련된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모든 항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항의 당사자의 항의 내용과 항의 대상자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항의료와 함께)

18.5 항의 수령은 수령 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실격한 경기참가자와 달리 리타이어 한 경기참가자는 여전히 항의 권한이 있다.

18.6 만약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는 심사위원회가 판정을 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 판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19. 재조사 권한

19.1 ISC 제14조에 의거하여 만약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나 챌린지 또는 시리즈 또는 국제 시리즈 경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련된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었고 관련 경기 시간에서 당사자들이 재검토 할 수 없었으며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하였건 안 하였건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이나 FIA에서 조직된 사람들이 발견 못하였을 경우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고 자신 앞에 놓인 사실들과 요소들에 비추어 판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소환을 위한 서로 협의된 날짜에 회의를 하여야 한다.

19.2 재조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원 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3 심사위원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련된 새로운 요소가 존재하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정은 국가 항소 법정이나 국제 항소 법정의 항소 대상이 아니다.

19.4 재조사 요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이 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유의하라. 관련 경기의 최종 순위 발표 후 14일

20. KARA에 항소하기 위한 절차

20.1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항소의사가 있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공식결과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대회사무국에 "항소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게 하고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고 96시간 이내에 최종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0.2 항소 의사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패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대회사무국 또는 KARA 사무국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소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4 판정이 내려진 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잠재적 항소인과 토론, 설명 또는 추가적 논의를 할 수 없다.

20.5 FIA 국제 항소 법원 규정 15항,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3.3조에 따라 항소 비용은 항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 의사를 통보했을 때 지불한다. 이 항소 비용은 대회사무국에 접수하거나 KARA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20.6 NCA(국가항소법원 또는 위원회)와 ICA(국제항소법원) 사이의 권한 구분이 명확해졌다.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ICA의 독점 권한 FIA 월드 챔피언십과 FIA 체제에서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

- ICA의 확장 권한 : 심리가 가능한 사안

i) FIA 지역 챔피언십 체제에서 NCA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

ii) FIA 컵, 트로피와 기타 FIA 시리즈, 국제 시리즈 및 여러 지역들에서 열리는 경기 체제에서 NCA의 판정에 반하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제기한 항소

- NCA의 독점 권한 : 다양한 자국 챔피언십 체제에서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에 대한 명확한 심리

한 시간 데드라인의 연장 : 심사위원회는 항소 의사표시가 1시간 데드라인의 준수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일 경우 다른 시간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판정문에 서면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판정이 공표된 지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 제기 시간은 연장될 것이다.

항소 통지 : 항소 권한은 심사위원회가 항소 의사를 통보 받은 순간부터 96시간 뒤 만료된다.

항소 보증금 : 이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 의사를 통보 받은 순간부터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는 순간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의 보증금 전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항의 체크리스트

이 문서는 심사위원이 항의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항의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항의 신청서가 작성 완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 등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참조하였습니다.

1. 심사위원장 : 서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특히 수령 시간을 포함하여 사본은 항의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ISC 제13.5.4조)

접수 시간 : _____ 기한 : _____ 적시 접수여부 (예 또는 아니오) : _____

2. 단일 선수(팀)가 단일 선수(팀)에 대해 제기한 항의입니까?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2조~제12.5조)

[*주의, 실격 선수와 달리 리타이어한 선수는 항의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3. 항의의 대상이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2.1조에 의해 허용되었습니까?

[*주의, 심사위원의 결정은 항소를 할 수 있을 뿐 항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4. 항의(예: 심사위원의 직무상 결정에 대한 항의(ISC 제13.7조))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주의, 사실 판단에 관한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0.21조 및 대회 특별규정내 항의 요건을 확인 하십시오.]

5. 해당 스포츠 규정(예: 연습세션 단축)에 따라 항의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항의가 있습니까?

6. 항의가 적시에 접수되었는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3조)

7. 항의는 서면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 되었습니까?

관련 규정,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우려사항 및 제기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8. 항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의자에게 심사위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항의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9. 항의 보증금이 납부되어 있습니까?

10. 심사위원장 : 증거의 보호, 차량 구성 요소의 봉인 또는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11. 심사위원장 : 기록위원장에게 순위 지정을 보류하도록 통지하거나 잠정적으로 하도록 통지합니다.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6조 2항)

12. 심사위원장 :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상을 보류하도록 주최측에 통보합니다.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6조 1항)

13. 심사위원장 : 항의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청문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십시오.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4조 1항)

시간 : _____ 장소 : _____

14. 항의자, 피항의자, 증인(있는 경우) 및 기타 독립적인 증인을 서면으로 소환하고 각각

의 개인에게 소환장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4조 3항)

15. 심사위원장 : 청문 시작하기 전에, 항의의 수용여부에 대해 당사자들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심사위원장 : 비공개로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결정이 필수입니다(항소 가능!). 그 사안이 승인될 것 같으면 심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17. 심사위원장 : 모든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해주세요. [*주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결석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ISC 제 13.6.4조)] 청문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야 합니다. 추가 기술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심사위원장 : 모든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정을 심의하며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19. 심사위원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 a. 항의는 성립되거나 기각되거나 철회되어야 합니다.
- b. 부과되는 페널티
- c. 드라이버가 실격되면 다른 순위 변경이 있습니까?
- d. 항의가 생겼나요? 예, 아니오 또는 부분적으로?
- e. 항의보증금의 처분(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8조 1~2항)
- f. 정당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8조 3항)

20. 심사위원장 :

- a. 판정과 페널티(있는 경우)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접수 확인 및 접수 시간(항의의 적시성을 위해 중요)을 알려줍니다.

b. 항소할 권리와 항소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조언합니다.

c. 공식/디지털 게시판에 공표 시간과 함께 게시합니다.

d. 기록위원장과 주최자에게 결정 사항을 알리고 순위를 산정합니다. 순위는 여전히 잠정으로 간주됩니다.

e. 모든 증거/차량 구성품 등을 항의 의견 통지 마감기한까지 보관하십시오.

f. 만약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 차량 부품/ 차량을 반환 하십시오. 항의가 성립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성립된 경우 항의 보증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항의자가 서명할 영수증 확인서 작성) (ISC 제13.10.1조, 제13.10.2조)

g. 항소 의사가 있는 경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필요할 조치를 지시합니다.

h. 최종 순위 기록지에 서명합니다.

21. 특별한 상황:

a. 현장에서 또는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이 경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확인을 지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 심사위원회가 모든 참가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후속 청문/조치를 지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